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종류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3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종합·전문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6

②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당해공사에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분야 또는 평가요소별 배점한도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가산평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비율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적격심사(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는 이 기준 또는 입찰공고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등으로부터 발급되거나, 조달청에 통보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공(품질)평가점수 등의 자료는 LH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

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이하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라 한다)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입찰을 포함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계약상대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지급자재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나목까지 준용하여 평가하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분야의 전문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사.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이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실적 평가시 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 및 전문업종별 배점은 본문의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 평가한다.

다. 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가목을,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나목 본문을 각각 적용하여 평가하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다음 각 목의 방법,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⑧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의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경험은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복수의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 라목 또는 별표 6 제2호 다목을 준용하여 해당 주력업무분야별 실적으로 평가)하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 평가시 제7항,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업종” 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 및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인 경우에는 7억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사참여 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시공비율을 정한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 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2.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의 경우 상대 업종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해당 구성원의 공사참여 지분율에 대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제7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시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한다.

4의2.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가 단독(1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평가제외자의 분담공사 예정금액은 제3항제2호의 평가기준금액에는 포함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평가

③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는 공동이행업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시공경험

가. “동일 또는 유사실적”은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규모) 대비 공동이행업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5년간 실적” 평가 시 실적계수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에 각 별표에서 정한 수를 곱한 금액 대비 공동이행업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한다.

다. “품질평가점수”는 공동이행업체 구성원 각각의 품질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삭제>

4.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및 신인도 평가는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는 LH가 통보한 제출기한(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제2호서식
3. 심사관련 증빙서류
4.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추가 제출
5. 하도급관리 계획서 : 별지 제6호서식 (해당시)
6.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기타 LH가 요구한 자료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해당 업종에 대하여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신고하여 G2B에 등록된 자료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공사 ( )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및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발주자가 법인・개인인 경우는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추가 제출)로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입찰자로 하고,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제5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결정 점수(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에 미달되는 경우 순차로 차순위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을 적격심사대상자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에게 미리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및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⑧ LH는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서류는 LH가 통보한 제출기한(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삭제>

⑩ 제8항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으로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등)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통보일 현재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 통보일 현재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낙찰자 통보일 현재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 전체를 낙찰대상에서 배제한다.

③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상대 업종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상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재심사 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가 LH가 통지한 기한 내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PQ기준 등을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조건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계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구성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각 구성비율에서 가감하여 100%로 변경하여 산정)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따른 각 전문업종별 배점한도 및 평점과 종합공사 실적 우선평가에 따른 종합업종 평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제2조제7항제1호 사목 단서에 따라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의한 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 산정시 소수점 첫째 이하는 절상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10.30)

- 이 적격심사세부기준은 2009년 1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06.11)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28)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4.07)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6.04)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2.18)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5.31)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1)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21)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7.29)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4.03)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9.17)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11)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6.0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2.1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1-1>, <별지 1-2>에 따른 기술능력평가에 있어 공사 시공평가 또는 품질평가 점수는 시행일 이후 새로이 평가된 점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7.06.2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07)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0.1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5.24)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8.2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3.1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5.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신인도 감점 관련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PQ기준 별표 2 제5호다목 15의2)에 따른 감점은 2020년 3월 18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경우부터 산정한다.

부 칙(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0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0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1.14)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3.2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한다.

부 칙(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3.24)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7.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1.1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3.24)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의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벌점” 항목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전 입찰공고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평가 통보한 자료가 2023년 3월 1일 이후 공개되는 경

우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7.1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1.23)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0.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1의2] <삭제>

[별표 2]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합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계			50		
	· 경영상태 · 시공경험 · 신 인 도	아래 기술된 평가방법 참조		30		15 15 +1.5～-3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 경영상태, 시공경험, 신인도분야 평가 시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LH PQ기준에 의한다.

1. 경영상태 평가

가. 평가 방법

1) 입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표 평점 × 15/45로, 다목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평가등급의 평점 × 15/35로 각각 평가한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의 시공비율이 10% 이상(단독 포함)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에 5%를 가산평가한다.

나.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

1) 평가표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별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아래 적용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만, 전문공사(단일 전문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별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유동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아래 적용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만, 전문공사(단일 전문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영업기간		2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2.0 1.8 1.5
배점한도		45		

2)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중 하나에 의한다.

가)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 제출)되어 G2B에 등록된 경영상태 정보

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다)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와 함께 LH에 직접 제출한 결산서

3) 최근년도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관련협회에서 관련업계의 실적금액을 일괄 확인한 최종년도를 말한다.

4) 평가요소별 업종별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 통보에 발급시행일이 명시된 경우에는 발급시행일부터 적용한다.

5)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결과 해당업체의 비율이 부(-)의 수치인 업체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종별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인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최상등급, (-) 수치인 업체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

6) 부채총계 또는 유동부채가 '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보며,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하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하등급

7) 심사항목 중 평가자료 미제출 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 처리한다.

8) 업종별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9) 영업기간의 평가

가) 영업기간은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한다)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다) 제2조제7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영업기간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2020.12.29.) 제7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전환한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10) 감사(검토)인 의견 평가

가) 2)의 가)부터 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까지 작성한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준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발급하거나 G2B에 등록된 자료에 의해 감사(검토)의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

보고서 제출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제2호 주2)의 가목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다) 제출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 한다.

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1) <삭제>

2)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2. 시공경험 평가

가. "나"의 시공경험 평가표에 의한 평점으로 평가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표

공사종류 또는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등급 및 평점	비 고
가. 단지조성공사(15점) (주택단지,산업단지, 물류단지,관광단지등)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단지조성 공사 실적 * 입찰공고시 명시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200% 이상 (6.0점) B: 165% 이상 (5.5점) C: 130% 이상 (5.0점) D: 90% 이상 (4.0점) E: 50% 이상 (3.5점) F: 50% 미만 (3.0점)	
	최근5년간 토목공사실적 금액(백만원) *입찰공고시 명시	평점 = 실적계수×9 (다만, 평점상한은 9점임) *실적계수=실적합계액÷ (공사예정금액×5)	
나.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당해공사 규모의 1/3이상 공사에 한하여 인정) *입찰공고시 명시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15.0점) B: 85% 이상 (13.7점) C: 70% 이상 (12.4점) D: 50% 이상 (11.0점) E: 30% 이상 (9.7점) F: 30% 미만 (8.2점)	
다. "단지조성공사 또는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1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백만원) *입찰공고시 명시	평점 = 실적계수×13 (다만, 평점상한은 13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3)	실적은 업종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전문업종별,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품질평가점수 (LH의 품질 평가결과)	A: 90점 이상(5.0점) B: 88점 이상(3.0점) C: 85점 이상(2.0점) D: 83점 이상(1.5점) E: 80점 이상(1.0점) F: 80점 미만 (0점)	

1) 단지조성공사,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 적용한다.

2)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경험) 평가시 당해공사

규모가 1,000,000㎡를 초과하는 단지조성공사의 경우 규모는 1,000,00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3) 공사예정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복합업종인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공사예정금액은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한다.

5) 조경공사의 경우 실적계수는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으로 평가하고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3" 대신 "2"를 적용한다.

6) "단지조성공사 또는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는 업종별 공사실적과 품질평가점수로 평가하되 시공경험 분야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7) 4)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 시 토목·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구분계산 후 합산하되, 공종별 평점상한은 "공종별 시공비율×13"를 적용한다. 공종별 시공비율 계산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8)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 참여하는 자)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7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평가한다.

9) 시공경험평가표의 공사종류 또는 입찰방법이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시공경험평가표의 공사종류 또는 입찰방법 중 "다"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는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업종의 공사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총 배점한도는 15점으로 평점은 실적계수에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10) 공동계약일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시공경험평가표의 공사종류 또는 입찰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시공경험평가표의 공사종류 또는 입찰방법이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종합건설사업자(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시공경험평가표의 공사종류 또는 입찰방법 중 "다"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공사실적) 평가는 품질평가는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업종의 공사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총 배점한도는 15점으로 평점은 실적계수에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11)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공동계약으로서 시공경험평가표의 "다"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3*"까지만 인정한다.

*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3" 대신 "1",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3" 대신 "2"를

적용하며, 이하 11)내에서 동일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제2조제7항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참여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3”까지만 인정한다.

(2) (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7항제1호 사목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우선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으로 종합건설사업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해당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실적에 시공비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합산하여 평가]하고,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평점이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이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실적 평가시 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 및 전문업종별 배점한도는 시공비율을 적용한 본문의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1) 및 (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3)”까지만 인정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제2조제7항제1호 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 참여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나)를 준용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2) 품질평가점수는 연도별 시공품질평가(종합업무수행평가 대상공사를 제외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설비, 조경공사에 적용) 또는 종합업무수행평가(공동주택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설비, 조경공사, 종합업무수행평가 대상공사’ 외의 공사는 85점을 적용한다.

가) 품질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종류별 최근 평가한 연도와 그 직전 2개 연도(이하 “최근 3년간”이라 한다)에 획득한 해당 평가결과[LH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에 따른 시공품질평가 또는 종합업무수행평가 결과를 말한다. 이하 12)내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평가년도는 입찰공고시 안내)

나) 최근 3년간 해당 평가결과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획득한 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

다) 최근 3년간 해당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5점 적용

라) 2020년까지 발표되는 연도별 시공품질평가결과는 대표사로 참여하여 획득한 점수에

한해 산정하며, 2020년에 시공품질평가하여 2021년 발표되는 연도별 시공품질평가결과부터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획득한 점수 전체 적용

13) 공동계약일 경우 품질평가점수는 공동이행업체 구성원 각각의 12)의 품질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14) 제2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자료(품질평가 제외)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 <삭제>

4. 신인도 평가

가. 신인도는 공사 유형에 따라 나목 및 다목과 같이 평가하되, 각 유형의 공사 평가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종합공사 평가방법

1) PQ기준[PQ기준 개정(2022.09.26.) 이전 PQ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별표 2 제5호의 신인도 평가결과 평점에 × 30/100으로 계산한 점수(배점한도 +1.5～-3.0)와 주요벌점 평가점수의 합을 최종 신인도 평가 점수로 한다.

2) <삭제>

3) <삭제>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PQ기준 심사항목	PQ기준 심사항목별 평가요소 (다만, PQ기준 심사항목 다. 12의2) 평가시 가점항목만 적용)	PQ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PQ기준 심사항목별 등급 (다만, PQ기준 심사항목 다. 12의2) 평가시 A～E 등급만 적용)	PQ기준 심사항목별 평점
<삭제>				
합 계 [최종평점 : 신인도 평점 합계×(30/100)]		+1.5～-3		

※ PQ기준 심사항목의 경우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PQ기준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PQ기준 신인도 심사항목 중 라. 17), 마. 18) 평가는 개정(2022.09.26.) 이후 PQ기준을 적용한다.

다.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평가방법

1) PQ기준 별표 2 제5호의 신인도 평가항목(배점한도 +1.5～-3.0)과 주요벌점 평가점수의 합을 최종 신인도 평가점수로 한다.

2) 1)의 PQ기준 별표 2 제5호의 신인도 평가항목은 가. 1), 나. 8), 나. 9), 다. 14), 다. 15), 다. 15의2), 다. 16), 라. 17), 차. 41)만 평가한다.

3) <삭제>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삭제>	-7	A: 처분을 1회 받은 자 B: 처분을 2회 받은 자 C: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3.0 -5.0 -7.0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7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합산벌점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5	A: 0.5점미만 B: 0.5점 이상 1점 미만 C: 1점 이상 2점 미만 D: 2점 이상 10점 미만 E: 10점 이상 15점 미만 F: 15점 이상 20점 미만 G: 20점이상	-0.1 -0.2 -0.3 -1.0 -2.0 -3.0 -5.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일자리창출 관련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1.5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1.0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0.5
<삭제>	<삭제>			
합 계 [최종평점 : 신인도 평점 합계]		+1.5~-3		

※ PQ기준 심사항목의 경우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PQ기준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PQ기준 신인도 심사항목 중 라. 17) 평가는 개정(2022.09.26.) 이후 PQ기준을 적용한다.

라. 주요벌점 평가방법

1) 주요벌점 평가점수는 직전반기(6개월)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 가목 중 1)-가), 4)-가), 11)-가), 18)-가)에 해당하는 부실로 벌점을 받은 업체는 -1.5점으로 하고,

2) 1)-나), 4)-나), 18)-나)에 해당하는 부실로 벌점을 받은 업체는 -0.75점으로 한다.

5.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하도급 시행비율	· 하도급 시행비율 (총하도급예정금액/ 총도급액)	5	A:40% 이상 B:30% 이상	5.0 4.0
하도급 금액비율	· 하도급 금액비율 (총하도급계약예정금액/ 총하도급예정금액)	5	A: 82% 이상 B: 80% 이상 C: 77% 이상	5.0 4.0 3.0
계		10		

가.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나.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시 해당 평가요소별 비율산정은 백분율 계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의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6.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한다.

7. 입찰가격 평가

가. 평점(점) = $5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 |은 절대값 표시임.

다.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90.5/100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마.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3] (제2조제1항제3호 관련)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table>
<tr><th>구분</th><th>심사 분야</th><th colspan="2">심사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 한도</th><th colspan="2">등 급</th><th>평점</th></tr>
<tr><td colspan="4">합 계</td><td></td><td>100</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11">당해 공사 수행 능력</td><td colspan="3">계</td><td></td><td>30</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10">·경영 상태
※ 1) 또는 2) 중 택일</td><td rowspan="4">1)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및 영업 기간</td><td>소계</td><td></td><td>15</td><td>A공사</td><td>B공사</td><td></td></tr>
<tr><td>최근년도 부채 비율(부채총계 /자기자본)</td><td>업체별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아래 적용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만, 전문공사(단일 전문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td><td>7</td><td>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td><td>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td><td>7.0
6.2
5.4
4.6
3.8</td></tr>
<tr><td>최근년도 유동 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td><td>업체별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유동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아래 적용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만, 전문공사(단일 전문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td><td>7</td><td>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td><td>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td><td>7.0
6.2
5.4
4.6
3.8</td></tr>
<tr><td>영업기간</td><td></td><td>1</td><td colspan="2">A: 3년 이상
B: 1년 이상
C: 1년 미만</td><td>1.0
0.9
0.8</td></tr>
<tr><td>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td><td>신용평가등급</td><td>15</td><td colspan="3">*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td></tr>
<tr><td rowspan="2">·시공 경험</td><td>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td><td>실적금액(백만원)</td><td rowspan="2">15</td><td colspan="3">평점 = 실적계수× 13
(다만, 평점상한은 13점임)</td></tr>
<tr><td>품질평가점수</td><td>LH의 품질평가결과</td><td colspan="2">A: 90점 이상
B: 88점 이상
C: 85점 이상
D: 83점 이상
E: 80점 이상
F: 80점 미만</td><td>5.0
3.0
2.0
1.5
1.0
0</td></tr>
<tr><td>·신인도</td><td>PQ심사항목 등</td><td>·종합공사
·전문공사
·종합,전문 이외 공사</td><td>+3.0～-1
+1.5～-1
+1.5</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입찰가격</td><td></td><td>70</td><td colspan="2"></td><td></td></tr>
<tr><td>기타 당해 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td><td>·당해 공사 수행 능력 결격 여부</td><td colspan="2">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td><td></td><td>△10</td><td colspan="2"></td><td></td></tr>
</table>

*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평가하는 방법 또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입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평가한다.

1. 경영상태 평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이하 “여성기업”이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한다)의 시공비율이 10% 이상(단독 포함)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평가하는 경우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별표 2 제1호나목 2)에서 규정하는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하다.
2) 최근년도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관련협회에서 관련업계의 실적금액을 일괄 확인한 최종년도를 말한다.
3) 평가요소별 업종별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 통보에 발급시행일이 명시된 경우에는 발급시행일부터 적용한다.
4)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결과 해당업체의 비율이 부(-)의 수치인 업체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종별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인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최상등급, (-) 수치인 업체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
5) 부채총계 또는 유동부채가 ‘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보며,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하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하등급

6) 심사항목 중 평가자료 미제출 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 처리한다.
7) 업종별 평균비율이 없는(복수의 업종을 입찰참가 허용한 경우 일부 업종의 평균비율이 없는 경우 포함)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8) 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며,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9) 영업기간의 평가

가)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한다)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1)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2)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다) 제2조제7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영업기간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2020.12.29.) 제7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전환한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10) 별표 2 제1호나목 10)의 '감사(검토)인 의견 평가'의 규정은 미적용한다.

11) <삭제>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1)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2) <삭제>

2. 시공경험 평가

가. 공사예정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평가는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금액으로 하며, 회사설립기간 등으로 인하여 실적금액의

계산기간이 5년에 미달할 경우에도 최근 5년간의 실적금액으로 한다.

다. 복합업종인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공사예정금액은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한다.

라. 실적계수

실 적 계 수	비 고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	*주1)참조

※ 주1)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신설업체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이 해당 신설업체의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업체의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의 1배의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한다.

[신설업체 : 회사설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합병전 기간 포함)과 영업기간(양수·양도 통한 영업기간 합산)이 모두 3년 미만인 업체]

마. 시공경험 평가는 업종별 공사실적과 품질평가점수로 평가하되 시공경험 분야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바.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 참여하는 자)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7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평가한다.

사. 공동계약일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공동계약으로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1”까지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제2조제7항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참여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1”까지만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7항제1호 사목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우선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으로 종합건설사업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해당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실적에 시공비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합산하여 평가]하고,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평점이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이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실적 평가시 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 및 전문업종별 배점한도는 시공비율을 적용한 본문의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1)” 까지만 인정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제2조제7항제1호 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 참여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2)을 준용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아. 품질평가점수는 연도별 시공품질평가(종합업무수행평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공사를 제외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설비, 조경공사에 적용) 또는 종합업무수행평가(공동주택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수선유지급여 주택개보수공사에 적용)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설비, 조경공사, 종합업무수행평가 대상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공사’ 외의 공사는 85점을 적용한다.

1) 품질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종류별 최근 평가한 연도와 그 직전 2개 연도(이하 “최근 3년간”이라 한다)에 획득한 해당 평가결과(LH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에 따른 시공품질평가 또는 종합업무수행평가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평가년도는 입찰공고시 안내)

2) 최근 3년간 해당 평가결과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획득한 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

3) 최근 3년간 해당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5점 적용

4) 2020년까지 발표되는 연도별 시공품질평가결과는 대표사로 참여하여 획득한 점수에 한해 산정하며, 2020년에 시공품질평가하여 2021년 발표되는 연도별 시공품질평가 결과부터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획득한 점수 전체 적용

5)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경우 2022년에 사업수행능력평가하여 2023년 발표되는 평가결과부터 품질평가점수 산정시 반영

6) LH에서 2023년 이후 선정한 우수전문건설업체인 경우 해당 전문업종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1년간(종료기한은 입찰공고일 기준) 품질평가점수(시공품질평가, 종합업무수행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공사 모두 포함)는 90점 적용

자. 공동계약일 경우 품질평가점수는 공동이행업체 구성원 각각의 아목의 품질평가점수

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차. 제2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자료(품질평가 제외)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 <삭제>

4. 입찰가격 평가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1) 평점(점) = $7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 |는 절대값 표시임.

3)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5)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1) 평점(점) = $7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 |는 절대값 표시임.

3)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5)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에 미달시 10점 감점한다.

나. 기술자보유여부 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거나 동 협회에서

직접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구성원 포함) 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다. 나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라. 평가기준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6. 신인도 평가

가. 신인도는 공사 유형에 따라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이 평가하되, 각 유형의 공사 평가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종합공사 평가방법

1) PQ기준[PQ기준 개정(2022.09.26.) 이전 PQ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별표 2 제5호의 신인도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2) 1)의 PQ기준 별표 2 제5호의 신인도 평가항목은 다. 12의2)(가점항목만 적용), 다. 13), 다. 15의2), 차. 40), 차. 41)만 평가한다. 다만, 차. 40)과 차. 41)의 평가는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3) 신인도 배점한도는 +3~-1로 한다.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1.0 +0.8 +0.6 +0.4 +0.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2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2.0 +1.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1.5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	+1.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0.5
<삭제>	<삭제>	<삭제>		
합 계		+3~-1		

※ PQ기준 심사항목의 경우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PQ기준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전문공사 평가방법

1) PQ기준 별표 2 제5호의 신인도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2) 1)의 PQ기준 별표 2 제5호의 신인도 평가항목은 다. 15의2), 차. 41)만 평가한다.

3) 신인도 배점한도는 +1.5~-1로 한다.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1.5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1.0 +0.5
<삭제>	<삭제>	<삭제>		
합 계		+1.5~-1		

※ PQ기준 심사항목의 경우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PQ기준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라.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이외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평가방법

1) PQ기준 별표 2 제5호의 신인도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2) 1)의 PQ기준 별표 2 제5호의 신인도 평가항목은 차. 41)만 평가한다.

3) 신인도 배점한도는 +1.5로 한다.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일자리 창출 관련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1.5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1.0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0.5
<삭제>	<삭제>	<삭제>		
합 계		+1.5		

※ PQ기준 심사항목의 경우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PQ기준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합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계				20		
	・경영상태 ※ 1) 또는 2) 중 택일	소계			10		
		1) 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체별 부채비율/업종별 평균부채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아래 적용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만, 전문공사(단일 전문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체별 유동비율/업종별 평균유동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아래 적용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만, 전문공사(단일 전문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10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단, 별표 7에 따른 평점×10/35로 평가)	
	・시공경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실적금액(백만원)	10	평점 = 실적계수×8 (다만, 평점상한 8점)	
		품질평가점수		LH의 품질평가결과		A: 90점 이상 B: 88점 이상 C: 85점 이상 D: 83점 이상 E: 80점 이상 F: 80점 미만	5.0 3.0 2.0 1.5 1.0 0
	・신인도	PQ심사항목 등		・종합공사 ・전문공사 ・종합,전문 이외 공사	+3.0~-1 +1.5~-1 +1.5		
입찰가격					8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10		

1. 경영상태 평가

별표 3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단독 포함)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시공경험

가. 실적계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2)로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신설업체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이 해당 신설업체의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업체의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의 1/2배의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한다.

[신설업체 : 회사설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합병전 기간 포함)과 영업기간(양수·양도 통한 영업기간 합산)이 모두 3년 미만인 업체]

나.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 참여하는 자)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7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평가한다.

다. 공동계약일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공동계약으로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1/2”까지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제2조제7항제1호 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을 합산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1/2”까지만 인정한다.

다) 나)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7항제1호 사목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우선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으로 종합건설사업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해당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실적에 시공비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합산하여 평가]하고,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평점이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가)에서 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제2조제7항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참여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1/2”까지만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7항제1호 사목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우선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으로 종합건설사업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해당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실적에 시공비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합산하여 평가]하고,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평점이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이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실적 평가시 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 및 전문업종별 배점한도는 시공비율을 적용한 본문의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1/2)” 까지만 인정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제2조제7항제1호 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 참여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2) 및 3)를 준용하여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거나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기타사항은 별표 3 제2호의 “시공경험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3. 입찰가격 평가

가. 평점(점) = $8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 | 는 절대값 표시임.

다.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마.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별표 3 제5호의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방법과 동일

5. 신인도 평가는 별표 3 제6호의 “신인도 평가” 방법과 동일

[별표 5] (제2조제1항제5호 관련)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합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계				10		
	·경영상태 ※ 1) 또는 2) 중 택일	소계			5		
		1) 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체별 부채비율/업종별 평균부채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아래 적용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만, 전문공사(단일 전문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3.0 2.7 2.4 2.1 1.8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체별 유동비율/업종별 평균유동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아래 적용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만, 전문공사(단일 전문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5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단, 별표 7에 따른 평점×5/35로 평가)	
	·시공경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실적금액(백만원)	5	평점 = 실적계수× 5 (다만, 평점상한 5점)	
	·신인도	PQ심사항목 등		·종합공사 ·전문공사 ·종합,전문 이외 공사	+3.0~-1 +1.5~-1 +1.5		
입찰가격					9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10		

1. 경영상태 평가

가. 별표 3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단독 포함)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나.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만점을 부여하고,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

제표로도 평가 가능하다.

2. 시공경험 평가

가. 실적계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 × 1/2)로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신설업체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이 해당 신설업체의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업체의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의 1/2배의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한다.

[신설업체 : 회사설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합병전 기간 포함)과 영업기간(양수·양도 통한 영업기간 합산)이 모두 3년 미만인 업체]

나.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 참여하는 자)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7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평가한다.

다. 공동계약일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 평가는 별표 4 제2호 다목을 적용한다.

라. 기타사항은 별표 3 제2호의 “시공경험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3. 입찰가격 평가

가. 평점(점) = $9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 | 는 절대값 표시임.

다.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마.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별표 3 제5호의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방법과 동일

5. 신인도 평가는 별표 3 제6호의 “신인도 평가” 방법과 동일

[별표 6] (제2조제1항제6호 관련)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합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계				10		
	·경영상태 ※ 1) 또는 2) 중 택일	소계			10		
		1) 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체별 부채비율/업종별 평균부채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아래 적용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만, 전문공사(단일 전문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5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체별 유동비율/업종별 평균유동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아래 적용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만, 전문공사(단일 전문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5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10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단, 별표 7에 따른 평점×10/35로 평가)	
	·특별신인도	공사예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이 1배 이상인 자			+2		
	·신인도	PQ심사항목 등		·종합공사 ·전문공사 ·종합,전문 이외 공사	+3.0~-1 +1.5~-1 +1.5		
입찰가격					9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10		

1. 경영상태 평가

가. 별표 3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단독 포함)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나.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만점을 부여하고,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하다.

2. 특별신인도 평가

가. 별표 3 제2호의 “시공경험 평가” 방법을 적용하되, 같은 호 라목의 주1), 바목, 사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종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특별신인도 평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분야의 전문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 또는 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에 대한 특별신인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2026.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구분된 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 이내에서 인정된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2) <삭제>

3)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1)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과 합산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전문업종별 실적 평가시 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본문의 종합공사 실적을 제외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공동계약일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공동계약으로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특별신인도는 별표 4 제2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별표 4 제

2호 다목 중 “1/2” 대신 “1”을 적용한다.

3. 경영상태와 특별신인도를 합한 점수는 10점을 한도로 한다.

4. 입찰가격 평가

가. 평점(점)=90 - 20×｜($\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10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 ｜는 절대값 표시임.

다.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마.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별표 3 제5호의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방법과 동일

6. 신인도 평가는 별표 3 제6호의 “신인도 평가” 방법과 동일

[별표 7]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심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4. 등급별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공고번호 :
○공 사 명 :
○입찰일시 :

위 건 공사입찰에 대한 적격심사에 대하여 적격심사 관련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경영상태 평가시 부채비율 등에 의한 방법과 신용평가등급 등에 의한 방법 중 ----------(주1.)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제 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목록(주2.)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주1. 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 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 위 ------- 란에 구성원을 명기하여 구분하여 기재
주2. 제출서류 목록은 모두 기재 및 첨부서류를 순서에 맞게 편철

[별지 제2호서식]
<별표 2의 경우>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총 괄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종합평가

구 분	종합평점	당 해 공 사 수 행 능 력						입찰가격
		소 계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심사평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자기평가 평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 ★는 작성생략, 심사기관에서 작성

다. 업체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업 체 등 록 번 호	
시 공 능 력 공 시 액	
도 급 순 위	
주 소	
전 화 번 호	
작 성 자	
사업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2. 시공경험평가 [공사종류 또는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 작성]

가. 단지조성공사의 경우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입찰자 평 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단지조성공사 실적		6	
최근 5년간 토목공사실적 금액	점수=실적계수×9	9	
평가합계			

나. 실적보유자 자격 제한하는 경우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입찰자 평 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당해공사 규모의 1/3 이상 공사에 한하여 인정)		15	
평가합계			

다. 가목 및 나목 이외 경우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입찰자 평 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실적계수×13	13	
품질평가점수 (LH의 품질평가 결과)		5	
평가합계			

※ 실적부문과 품질평가부문으로 평가하되, 시공경험의 배점한도(15)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영상태평가 [가목 및 나목 중 택일하여 작성]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으로 평가하는 경우

심사항목	등급	배점한도	입찰자 평점
최근년도부채비율	A B C D E	22.0 19.7 17.5 15.2 13.0	
최근년도유동비율	A B C D E	21.0 18.7 16.5 14.2 12.0	
영업기간	A B C	2.0 1.8 1.5	
평가합계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입찰자 평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4.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자평점
PQ기준 심사항목			
<삭제>			
주요벌점			
평가합계 (종합공사 : 항목별 평점합계 × 30/100) (종합공사 외 : 항목별 평점합계)		+1.5 ~ -3	

5.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입찰자 평 점
하도급 시행비율		5	
하도급 금액비율		5	
평가합계			

<별표 3 ~ 별표 6의 경우>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총 괄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종합평가

구 분	종합평점	당 해 공 사 수 행 능 력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입찰가격
		소 계	시공경험	경영상태	특 별 신인도		
★심사평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자기평가 평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 ★는 작성생략, 심사기관에서 작성

다. 업체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업 체 등 록 번 호	
시 공 능 력 공 시 액	
도 급 순 위	
주 소	
전 화 번 호	
작 성 자	
사업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2. 시공경험평가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입찰자 평 점
		별표 3	별표 4	별표 5	
공사 예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	점수=실적계수 ×13,8,5	13	8	5	
품질평가점수 (LH의 시공품질평가 결과)		5.0	5.0	해당없음	
평가합계					

※ 별표 3, 별표 4의 경우 시공경험은 실적부문과 품질평가부문으로 평가하되 시공경험의 배점한도[15,1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영상태평가 [가목 및 나목 중 택일하여 작성]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으로 평가하는 경우

심사항목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입찰자 평 점
	등급	배점 한도	등급	배점 한도	등급	배점 한도	등급	배점 한도	
최근년도부채비율	A B C D E	7.0 6.2 5.4 4.6 3.8	A B C D E	5.0 4.5 4.0 3.5 3.0	A B C D E	3.0 2.7 2.4 2.1 1.8	A B C D E	5.0 4.5 4.0 3.5 3.0	
최근년도유동비율	A B C D E	7.0 6.2 5.4 4.6 3.8	A B C D E	5.0 4.5 4.0 3.5 3.0	A B C D E	2.0 1.8 1.6 1.4 1.2	A B C D E	5.0 4.5 4.0 3.5 3.0	
영업기간	A B C	1.0 0.9 0.8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평가합계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입찰자 평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4.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자평점
PQ기준 심사항목			
<삭제>			
평가합계			

※ 기타공사는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를 말한다.

5. 특별신인도 평가 [별표 6의 경우에만 해당]

심사항목	배점한도	입찰자확인		입찰자평점
		해당있음	해당없음	
공사예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이 1배 이상인 자	+2			

6.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심사항목	배점한도	입찰자확인		입찰자평점
		해당있음	해당없음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10			

[별지 제3호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 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따라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기준 중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따라 공시된 당해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공시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지 제4호서식]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table>
<tr><td rowspan="2">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td><td rowspan="2"></td><td>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td><td>건설부문 총매출액</td></tr>
<tr><td></td><td></td></tr>
<tr><td rowspan="2">기술개발 투자비율</td><td rowspan="2"></td><td>기술개발투자액</td><td>총매출액</td></tr>
<tr><td></td><td></td></tr>
<tr><td colspan="4">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td></tr>
</table>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지 제5호서식]

시설공사 [ ]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평가관련)

<table>
<tr><td colspan="2">공사 입찰참가 등록번호</td><td colspan="2"></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회 사 명</td><td colspan="3"></td><td colspan="2">대 표 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영업소재지</td><td colspan="3"></td><td colspan="2">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업 종 별
등록 번 호</td><td>토 건</td><td>토 목</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제 호</td><td>제 호</td><td>제 호</td><td>제 호</td><td>제 호</td><td>제 호</td><td></td></tr>
<tr><td colspan="8">최근 년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td></tr>
<tr><td colspan="2">구 분</td><td>건 수</td><td>실적금액</td><td colspan="4">비 고</td></tr>
<tr><td colspan="2">200 년도</td><td></td><td></td><td colspan="4" rowspan="7">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를 포함하여 과거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
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함</td></tr>
<tr><td colspan="2">200 년도</td><td></td><td></td></tr>
<tr><td colspan="2">200 년도</td><td></td><td></td></tr>
<tr><td colspan="2">200 년도</td><td></td><td></td></tr>
<tr><td colspan="2">200 년도</td><td></td><td></td></tr>
<tr><td colspan="2">합 계</td><td></td><td></td></tr>
<tr><td colspan="8">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td></tr>
</table>

[별지 제5호의2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의 붙임 서식)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 약 금 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5)업종별 00년도 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Ⅲ. 붙 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0000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6호서식]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 사 명:

입찰가격(A)	하도급할 공사금액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비고
10,000,000(A) *발주자제공 지급자재비 제외	4,000,000(B)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비 제외	3,280,000(C)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비 제외	
하도급 시행비율(B/A) : 40.0%, 하도급 금액비율(C/B) : 82%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대로 시행하겠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시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 금액에는 발주자·수급인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